

상공회의소 법령안내

◎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는 법정 민간경제단체로 **상공회의소법**에 의거하여 상공업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884년 한성상업회의소 설립 이후 현재까지 경제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온 주역으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한 **국내 최고의 종합경제단체입니다.**

◎ 상공회의소법 주요내용

제10조(회원) ① 상공업(「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을 얻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상공업자”라 한다)는 그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매출세액[「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영세율(零稅率)이 적용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상공업자는 당연히 회원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회원의 대상기준은 물가상승률과 그 밖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3년마다 조정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1)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3)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시행 2025.10.1.]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1조(당연회원의 기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당연회원이 되는 매출세액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에 소재하는 자: 17억 원

2. 광역시에 소재하는 자: 5억 원

3. 시 · 군에 소재하는 자: 2억 5천만 원

제13조(회원 등의 권리) ① 회원 및 특별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22조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 및 특별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4조(회원 등의 의무) ① 회원과 특별회원은 상공회의소의 운영 및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회원과 특별회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

③ 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회원이 제10조제3항의 회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청주상공회의소 회비규정

제4조(회비) 제②항 당연가입회원의 회비는 그 회원의 부가가치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 합산한다)에 1,000분의 2.2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회원대장) ① 상공회의소는 회원 및 준회원에 대한 회원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공회의소는 회원대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원 및 준회원에게 매출액과 제품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과 준회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회원과 준회원의 특히 · 기술이나 그 밖의 영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회원대장의 작성과 관련하여 상공업자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